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 3. 30(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6. 3. 29	매 수	총 15매
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	담당	기술혁신평가국	과 장	조울래	031) 436-8622
	담당	평가정책과	사무관	권기석	031) 436-8623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 개최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1차적인 토의 및 의견수렴,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가 3.29일(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3층 310호 Jade room)에서 개최된다.
-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본 토론회는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 시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서
-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대학, 연구소,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원 및 관련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한다.
- 「연구진실성과 과학부정행위의 쟁점과 과제(서울대 홍성욱 교수)」 및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항희 박사)」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예정이다.

□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 줄기세포연구의 진위성 논란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와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적인 연구 환경과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 정부는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연구윤리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 연구부정행위는 전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경쟁 심화와 연구지원 확대가 이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진단하면서
-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돌이켜 보고 보완하는 자리로 삼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뒤이어 본 토론회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홍성욱 교수는 「연구진실성과 과학 부정행위 : 쟁점과 과제」란 주제에서 과학 부정행위의 역사와 원인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설명하면서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검증기구 설치 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구윤리 교육 등을 통해 연구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 두 번째 발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황희 박사는 오늘 토론회의 핵심내용인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안은 연구자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제2장 및 3장), 연구윤리·진실성 확립을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제5장)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체제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공통기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에는 대학, 연구소, 유관단체, 언론사 및 NGO의 관계 전문가 8인이 참여하여
- 연구윤리·진실성은 과학기술계가 자율적으로 확립해나가야 할 사항이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을 벌이고,

- 또한 연구부정행위의 사후검증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연구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관리,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본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 가이드라인 시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향후 작업 진행방향, 가이드라인 적용대상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문답이 진행되고,
- 특히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제가 제대로 정착·작동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철저한 보호와 객관적인 조사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과기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1 : 토론회 개요

2 : 가이드라인 시안 주요 요지

3 : 가이드라인 시안 작업 경위

4 : 향후 가이드라인 작업 계획

5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

참고 1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 개요

□ 개 요

- 일시 : 2006. 3.29(수) 15:00~18:00
- 장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층 310호 (Jade room)
- 주최 :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주제 : 1. 연구진실성과 과학적 부정행위 : 쟁점과 과제
2.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

□ 순서

시간(분)	구분	비 고
15:00~15:10 (10)	축사	부총리
15:10~15:20 (10)	개회사	STEPI 원장
15:20~15:50 (30)	주제1 발표 (연구진실성과 과학 부정행위 : 쟁점과 과제)	서울대 홍성욱 교수
15:50~16:10 (20)	주제2 발표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안)	STEPI 조황희 박사
16:10~16:20 (10)	휴식	
16:20~17:20 (60)	지정토론	(과총) 문유현 사무총장
		(과기한림원) 이충희 이사
		(산기협) 허현희 상임이사
		(대학 연구윤리) 이화여대 학생처장 최경희 교수
		(출연연 연구윤리) KIST 유명희 프로테오믹스연구단장
		(연구윤리 교육) 서울대 의대 김옥주 교수
		(언론) 경향신문 이은정 기자
	(시민단체)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운영위원
17:20~17:50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사회자
17:50~18:00 (10)	마무리, 폐회	사회자

참고 2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 가이드라인 시안은 연구자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진실성 확립을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우선, 연구자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시안의 제2장과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 연구진실성 존중, 연구공로의 정당한 배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투명하고 합목적적인 연구비 사용, 소관 연구분야의 윤리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 연구윤리·진실성 확립을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시안 제4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관리하고,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절차 마련, 제보자 보호 및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진실성 확립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취해야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시안 제5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 진실성 검증주체, 검증절차, 검증기구 구성원칙, 조사과정의 기록과 공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 본 가이드라인 시안은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체제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공통기준 위주로 구성하였다.

참고 3

가이드라인 시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 가이드라인 시안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계는 물론 인문사회, NGO,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토록 한 것으로
 - 지난 해 말부터 조사·분석해 온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하고
 - 과학기술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3일 과학기술계 원로정책자문회의와 3.15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등을 마련하였다.
- 금일 시안은 토론회 발제를 위한 안으로서
 - 토론에서 제기된 토론자 및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1차적으로 반영하고
 - 향후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기관, 유관단체, 연구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4

토론회 이후 가이드라인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과정과 관계부처 협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등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우선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하여
 - 4월 중엔 국공립(연) 및 출연(연), 과학기술 유관기구, 대학의 연구관리 관계자와 차례대로 가이드라인 시안 및 과학기술계의 자체검증체제 구축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과총 등 과학기술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사이버 토론방을 개설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가이드라인 시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보완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함으로써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6월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자체검증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자체검증체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 등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계획
-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해설서와 함께 각 부처 및 연구수행기관에 배포하고,
 -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각종 지원책의 제도화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장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대상

제1조.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임과 바람직한 자세를 명시하고, 연구와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진실성을 책임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윤리의 제고 및 진실성 확립의 풍토를 조성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 ①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자의 준수사항

제3조. 연구 수행에서의 진실성 존중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연구비 신청, 연구 수행 및 결과 분석, 연구결과의 발표 등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정직·정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자의적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왜곡하거나 표절하는 행위 등은 연구의 창의성과 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③ 발표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지식재산권 보호, 또는 연구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 연구 자료를 처음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각 연구기관은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 상호간 공동연구 또는 협력활동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연구 공로의 정당한 배분

- ① 논문저자 자격은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부여되어야 한다. 각 저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연구내용 및 결과를 숙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금 조달, 단순 데이터 또는 연구재료의 제공, 연구에 대해 상급자 위치 또는 일반적 관리감독관계 등은 감사의 표시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논문저자 자격부여 조건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명예저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주제의 논문을 중복하여 발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제5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동료의 연구에 대한 심사, 그리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경우 편견이나 자신의 이익, 또는 기타 이해관계의 고려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금전적 이해관계 및 연구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외부 활동을 소속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투명하고 합목적적인 연구비 사용

- 연구자는 연구비를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실 문화의 선진화

- ① 연구실 책임자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합리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 책임자는 구성원에게 연구 활동 제반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연구실 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정직·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장하여선 안 된다.

제8조.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준수

- 연구자는 본 가이드라인 이외의 특정 연구 분야 또는 특정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타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규범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 책임 인식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각종 행위가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국경, 성별, 민족, 종교, 정파 등을 초월하여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의 부정행위와 신고

제10조. 부정행위의 정의

- ① 제3조의 ①항 또는 ②항(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위배하는 행위), 제4조(공로배분), 제5조의 ①항(전문가로서의 각종 불공정한 행위), 제6조(연구비 부정사용), 제8조(특정 연구분야 윤리 위배)에서 규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②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기관의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 ③ 연구자는 상기 부정행위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 역시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④ 연구기관은 상기 부정행위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내부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관련규정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 부정행위의 신고

- ①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가 학문에 대한 신뢰, 나아가 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삼가야 함은 물론,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이를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창구를 지정하고 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의 권리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신분보장 등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의 절차 및 처리일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접수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13조.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

-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비의 배분과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구하고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위한 노력

- ① 연구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자체규정을 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접수창구 및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체검증체제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춘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는 기관평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④ 제①항의 자체규정 안에는 부정행위 관련 제반내용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연구자의 부정행위의 범위
 - (나) 부정행위 접수·조사·후속조치 등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책임자
 - (다) 증거자료의 범주
 - (라) 자체검증기구 구성원칙, 검증절차 및 기간
 - (마) 제재의 종류
 - (바)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 ⑤ 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제보자 보호

- ①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부정행위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제보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 접수 기관 및 검증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

- ①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에 대한 기관의 자체규정 및 관련 교육을 마련하여 신입 및 기존 연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자들은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대응 원칙과 제보 및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사항을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의 원칙과 절차

제17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제보내용을 해당 연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연구지원기관 또는 그 상위 기관이 조사를 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기관과 함께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사의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8조.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원이 참여한 기구(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예비조사-본조사-의견청취-판정'의 단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근거가 있어 이를 공식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혐의에 근거가 없거나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경우에는 본조사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나) '본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다) '의견청취'는 조사결과를 피조사자에게 확인시키고 변론이나 이의를 접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라) '판정'은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조사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이다. 판정은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또는 본조사 종료 후 의견청취 과정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각 연구수행기관은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기구 구성 원칙

- ① 검증기구의 형태는 최소 7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실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본조사를 담당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의 외부인이 다음 각호와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외부인의 비율은 최소한 3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예비 및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구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영상,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 과정에서의 기밀은 관련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최종조사결과 및 조사자 명단은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 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또는 참고인, 그리고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조사의 보고와 후속 조치

- ① 연구기관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용과 후속 제재 조치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에 의해 보고를 받은 기관은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법률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나) 지원기관에 재정적 손해 등을 끼쳤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기타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④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조사기구의 구성원
 - (나) 제보의 내용
 - (다) (본조사의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
 - (라)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자의 부정행위
 - (마) (본조사의 경우) 증거 및 증인
 - (바) (본조사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사) (예비조사의 경우)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아) (본조사의 경우) 제재에 대한 권고안
- 4) 연구기관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 지원기관은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기관과 조사혐의자에게 통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 5)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사법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2조. 검증당사자의 권리 존중

- ① 각 기관은 자체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본조사가 완결되고 당사자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부정행위로 최종 판단된 경우에도 혐의가 제기된 연구자는 자신을 변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3.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①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가)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원활한 결론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
 - (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
 - (다)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안
- ②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칙

- ① 본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자
- ② 제2조 ①항의 대상기관 중 별표에 해당하는 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윤리의 제고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과 진실성 검증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검증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부출연연구기관2. 국공립연구기관3. 연구관리전문기관4. 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05년말 기준 총 27개) |
|---|